신지원

교 재 명	2026 EBS물류관리사 단기완성
저 자	전표훈·변달수 공편저
발 행 일	2026년 1월 10일

출간 이후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정오표를 안내 드립니다.
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, 해당 내용은 차기 인쇄 시 반영하여 수정 출간하겠습니다.

▣ 1교시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등록일	비고
제1과목 **물류관리론** 20P 하단	㉡ 적재함 안쪽 최대폭 : 2,350mm cf. 8톤 트럭에 일관수송용 T-1 표준파렛트 12매가 적재됨	㉡ 적재함 안쪽 최대폭 : 2,350mm cf. 8톤 트럭에 일관수송용 T-11 표준파렛트 12매가 적재됨	2025-12-08	오류
제2과목 **화물운송론** 11P TIP	운송수요의 특징 • 운송수요는 운임의 변동에 대해 비탄력적	운송수요의 특징 • 긴급한 운송수요는 운임의 변동에 대해 비탄력적	2026-01-05	오류
제2과목 **화물운송론** 24P (3)	② 지선운송 : 물류거점 간 간선운송이 아닌 물류거점과 소도시 또는 물류센터, 공장 등 화물을 집화하고 배송(Delivery)하는 운송을 의미한다. 최근에는 라스트마일[1] 배송이라고도 한다. ③ 노선운송 : 정기화물 등과 같이 이미 정해진 노선과 수·배송계획에 따라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. ④ 집배운송 : 철도역, 공항, 물류센터 등 물류거점에서 화주의 문전까지 배송(Door to Door)하는 것으로서 단거리 운송에 해당하며 소형 트럭을 이용한다.	② 지선운송 : 물류거점 간 간선운송이 아닌 물류거점과 소도시 또는 물류센터, 공장 등 화물을 집화하고 배송(Delivery)하는 운송을 의미한다. ③ 노선운송 : 정기화물 등과 같이 이미 정해진 노선과 수·배송계획에 따라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. ④ 집배운송 : 철도역, 공항, 물류센터 등 물류거점에서 화주의 문전까지 배송(Door to Door)하는 것으로서 단거리 운송에 해당하며 소형 트럭을 이용한다. 최근에는 라스트마일[1] 배송이라고도 한다.	2026-07-09	오류 (위치 이동)
제3과목 **국제물류론** 30p ㉠	㉠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후 신용장상 유효기한 내 신용장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이다.	㉠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후 신용장상 유효기한 내 신용장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이다.	2026-07-09	오타

신지원

▣ 2교시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등록일	비고
제4과목 **보관하역론** 12P 박스	• BOT(Build Own Transfer) :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,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관리·운영한 후 계약 기간 종료 시 국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.	• BOT(Build Operate Transfer) :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,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관리·운영한 후 계약 기간 종료 시 국가에 양도하는 방식이다.	2025-12-24	오류
제5과목 **물류관련법규** 21P 중간	②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1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 2.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지정폐기물(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에 따라 **환경부장관**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·분말로 한정). 다만,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.	②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1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 2.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지정폐기물(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에 따라 **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**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·분말로 한정). 다만,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.	2025-12-08	법 개정
제5과목 **물류관련법규** 50P 상단	**① 공사시행 인가 신청** ㉡ **일반물류터미널사업**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**시·도지사**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.	**① 공사시행 인가 신청** ㉡ **일반물류터미널사업**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**시·도지사 등**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.	2026-07-06	법 개정
제5과목 **물류관련법규** 50P 중간	**② 변경인가** 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·도지사**는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**② 변경인가** 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·도지사 등**은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2026-07-06	법 개정
제5과목 **물류관련법규** 51P 하단	**(5) 국·공유지의 처분제한(법 제13조)** ②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(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함)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·도지사**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**(5) 국·공유지의 처분제한(법 제13조)** ②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(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함)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**시·도지사 등**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2026-07-06	법 개정

신지원

제5과목 **물류관련법규** 107P 그림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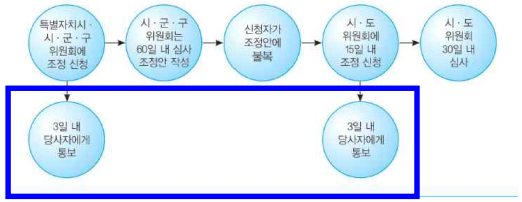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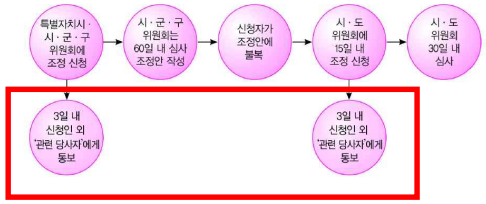	2026-04-15	오류
제5과목 **물류관련법규** 127P 박스	**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(법 제8조)** 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·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가.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나. 20세 이상일 것 다.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. 다만,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	**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(법 제8조)** 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·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가.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나. 18세 이상일 것 다.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경력(각 목의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말한다)이 1년 이상일 것 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- 「병역법」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(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) 중 화물자동차 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	2026-07-06	법 개정
제5과목 **물류관련법규** 148P 상단	**(1) 개념(법 제2조 제9호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)	**(1) 개념(법 제2조 제9호)** ① 특별시장·**통합특별시장**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)	2026-07-06	법 개정
제5과목 **물류관련법규** 165P 상단	㉡ 휴업기간 :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.	㉡ 휴업기간 :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. **다만,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, 철도시설의 개량,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**	2026-07-09	내용 추가

신지원

▣ 대표기출문제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등록일	비고
150p 08번 ②, ③	② 선용품·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**관세청장**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③ 선용품·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**관세청장**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	② 선용품·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**세관장**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③ 선용품·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**세관장**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	2026-06-30	오류
216p 10번 ④	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**통계청장**에게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	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**국가데이터처장**에게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	2025-12-08	법 개정
283p 10번	② 국토교통부장관의 ~ 받아야 한다. → **시·도지사**의 ~를 받을 수 있다(법 제9조 제1항)	② 국토교통부장관의 ~ 받아야 한다. → **시·도지사 등**의 ~를 받을 수 있다(법 제9조 제1항)	2026-07-06	법 개정